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동법 제19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6의3 제1호 중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로 한다)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거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를 “무주택세대구성원(나목에 따른 예비신혼부부”로, 같은 호 중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중전의 마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나.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로 한다)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거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일 것

별표 6의3 제2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나목을 완화하려는 경우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도심 공공주 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10. (생 략) <u><신 설></u>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지 역개발사업(동법 제19조 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 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